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66
----------	-------

발의연월일 : 2025. 11. 3.

발 의 자 : 이훈기 · 주철현 · 김승원
권향엽 · 박선원 · 문대림
이병진 · 허종식 · 오세희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감사 청구권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청구의 대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하지 못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경우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본문 중 “법령위반”을 “위법·부당한 행위”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는 그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실시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청구를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u>법령위반</u>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所长·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72조(감사청구권) ① ----- ----- <u>----위법·부당한 행위----</u> ----- ----- -----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u>대하여는</u>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 ----- <u>-----대하여는 그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u> <u>예</u> ----- ----- -----

② · ③ (생략)	<u>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 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서 제외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	---